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# 청주지방법원 2015. 8. 28. 선고 2015고단429 판결 특수절도,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,(통신매체 이용음란)

청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건 2015고단429 특수절도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
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 A

검사 배지훈(기소), 권인표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B(국선)

판결선고 2015. 8. 28.

주 문

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#### 1. 특수절도

피고인은 C, D, E 등과 함께 2013. 1. 24. 02:2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대원아파트 903동 지하주차장에서,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적재함 천막을 열고 그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갔다.

이로써 피고인은 C, D,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.

### 2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은 2013. 7. 14. 13:59경 청주시 흥덕구 H빌라 203호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,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'틱톡' 및 '카카오톡'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(여, 당시 17세)의 휴대전화로 "아다한번깨줘, 돈줄께, 함줄라구?, 보지빨고싶당, 함달라구" 등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
- 1. C, E,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
- 1.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F 작성의 진술서
- 1. 문자메시지 내역, CCTV 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331조 제2항, 제1항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

1. 형의 선택

징역형 선택[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]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

1. 선고유예할 형

징역 6월

1. 선고유예

형법 제59조 제1항

양형의 이유**[1]** 

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던 만 17세 때에 저지른 범행인 점,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,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,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, 그밖에 각 범행 후의 정황,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.

### 신상정보등록

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판사 문성관

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## 미주

[1]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. 0 절도범 죄군 >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> 제2유형 > 기본영역 : 징역 6월~1년6월